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2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황명선·조승래·이재관

박민규・송재봉・박희승

서미화 · 강득구 · 모경종

이해식 · 장경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'과밀억제권역'을 지정하고,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,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.

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, 특히 현행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"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

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"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,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,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·중·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학교"를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	제17조(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
특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	특례) ①
시・도지사는 「수도권정비계	
획법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	
에 불구하고 「수도권정비계획	
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	
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<u>학교</u>	<u>「초</u>
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	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
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	해당하는 학교
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· 승	
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.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